대한민국 국회
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

보도자료

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	
배포일시	2023. 3. 16.(목)	공보담당관실	02-6788-3655
위 원 회	기획재정위원회	담당 입법조사관	부이사관 주규준(02-6788-5157) 서기관 이상홍(02-6788-5155)

기재위 조세소위,
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 의결

-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-

-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등 -

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**오늘(3. 16.)** 조세소위원회(소위원장 류성걸) 회의를 열어 **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**을 의결하였다.

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, **▲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**로 정하고, 이러한 **▲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**를 위하여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**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%에서 15%로, 중소기업은 현행 16%에서 25%로 확대**하며, **▲ 2023년에 한해 신성장·원천기술 및 일반기술**에 대한 **2%p~6%p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**과 **모든 통합투자 증가분**의 **10%를 공제**하는 **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**하려는 것이다.

둘째, **교통비 부담 완화**를 위하여 **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**

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 **2023년 1년 동안** 기존 40%에서 **80%로 한시적으로 상향**하며,

셋째, **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**를 **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**하도록 하여 **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**하려는 것이다.

또한, 이번 대안에는 **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** 및 **하이일드펀드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**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.

한편,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**공공주택사업자**(한국토지주택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 등), **주택조합**, **공익법인**(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의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) 등 **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**에 대해서 중과 누진세율(최고 5.0%)이 아닌,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누진세율(최고 2.7%)을 적용하도록 하는 **「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을 의결**한바 있다.

이번에 의결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과 「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·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. //끝.